

접수	20 . . .	사망조위금 청구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으신 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소속 기관명			☞ 교직원 사망일 때에는 관계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휴대전화			사무실 전화	
		전자우편	@			
	우편 수령 주소 (도로명 주소)	☞()				
	금융기관			계좌번호		
	혼인신고일	년	월	일	☞ 청구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사망으로 청구할 때만 기재 ☞ 해당 날짜는 혼인관계증명서의 법적 신고일 기재	
사망자	성명			사망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청구인과의 관계 ※ 해당란에 ☑	<input type="checkbox"/> (생)부 <input type="checkbox"/> (생)모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모 <input type="checkbox"/> 자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양부 <input type="checkbox"/> 양모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양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양모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본인				
<p>※ 사망조위금은 유족이 되는 교직원이 2명 이상일 때 배우자가 1순위, 그 다음으로 연장자(부양자) 1명에 제한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가족 중에 사학연금법 적용자를 먼저 확인하여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p>						
제출 서류						
공통 서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2.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 발급 대상자에 유의)				
추가 서류	교직원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사망	(청구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 대상자에 유의)				
	교직원 배우자의 부모 사망	1.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 대상자에 유의) 2. (청구인 또는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교직원 본인 사망	(교직원의 부·모 또는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 대상자에 유의)				
청구인 또는 사망자가 외국인 및 국적 상실자		1. 해당 국가가 인정하는 각 증명서(공증소에서 번역 공증하여 제출) ☞ 대상자 인적 사항, 사망일, 청구인과의 관계 확인 등 국내 증명서에 준한 내용 포함 2. 제적등본 : 내국인의 국적상실 등이 2008년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추가				
증명서 발급 및 제출 유의 사항		1. 발급 방법 : 정부24 또는 지자체 방문 (발급일 유효기간 3개월) ☞ 반드시 사망신고 및 각 증명서에 '사망' 표기 확인 후 발급 2. 기본증명서 : 의료법상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사망 사실을 확인한 서류이며, '기본증명서'는 그 내용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 및 사망을 확정된 서류임 3. 주민등록번호 : 모든 서류는 '전부 공개'를 선택하여 발급 4. 수령 방법 : 반드시 '직접 인쇄'를 선택하여 출력 후 우편 또는 스캔하여 제출 ☞ '열람 본'은 법적 효력이 없어 불인정함				
<p>「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p>						

유의 사항

1. 교직원 본인이 사망하여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본 청구서가 없어도 함께 지급합니다.
2. 사망조위금은 사망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당시에 재직중인 경우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3. 지급 대상이 되는 교직원이 2명 이상일 때 우선이 되는 순위(시행령 제47조의2)

사망자	수급권자	수급권자 순위
교직원의 - 배우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자녀	교직원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교직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4. 사망한 사람의 부모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 위 순위에도 불구하고 부양하던 교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교직원에게 지급
교직원 본인	배우자 또는 장제자	1. 교직원 본인의 배우자 2. 장례 및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의 순위 1)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2)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교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사람 ※ 위 순위에도 불구하고 장례 및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에서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비속인 교직원이 있는 경우 그 교직원에게 지급

3. 혼인신고 이전에 배우자 부모가 사망한 때 혼인신고 후 아래의 증빙서류

증빙서류(3개 이상)	인정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첩장 ▶ 결혼식 사진(날짜 표기된 것) ▶ 결혼식 비용 정산내역서 ▶ 소속기관 결혼 관련 휴가 등 기안문 ▶ 소속기관 경조사 게시문 ▶ 경조금 지급 기안문 ▶ 그 밖에 결혼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증빙서류에는 결혼 일자와 함께 내용이 표기되어야 함 ▶ 증빙서류에 불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인용)이 있는 경우 인정

4.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은 친생부모(계부모는 비대상)가 사망한 때 증빙서류

진술서 및 필수 서류	선택서류(3개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생부모 사실관계 진술서 ▶ 청구인(배우자 포함)의 부 또는 모 기준 제적등본 ▶ 증빙서류에 불구하고 당사자 간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인용)이 있는 경우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인 기준 제적등본 ▶ 인사기록카드 ▶ (초중고) 생활기록부 ▶ 건강보험증 ▶ 부고장 등 장례 서류 ▶ 청첩장 ▶ 입퇴원확인서 ▶ 보험료납입확인서 ▶ 인우보증서(2명 이상) ▶ 그 밖에 입증 자료 <p>※ 부모, 피부양(피보험)자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p>

※ 인정조건 등 세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tp.or.kr) 서식자료실에 있는 [친생부모지급기준] 참조

5. 청구 시효 : 발생일(사망일)로부터 3년

6. 청구 안내

- ☞ 서식(제205호) 청구 : 홈페이지(www.tp.or.kr) / 소식·자료 / 연금자료 / 서식자료실
※ 청구서와 행정기관 등 발급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
- ☞ 인터넷 청구 : 홈페이지(www.tp.or.kr) / 재직교직원 / 사망조위금 청구(공동인증서 로그인)
※ 행정기관 등 발급 서류는 반드시 PDF화일(사진 촬영 금지)로 제출

☎ 문의 : 연금dream 콜센터 1588-4110

📍 주소 :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공단은 법률에서 정한 사실 조회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 업무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7조(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

항목	수집 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사무실 전화, 전자우편), 금융기관, 계좌번호, 혼인신고일	사망조위금 청구에 따른 심사, 지급 및 통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때는 사망조위금 청구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용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기록 열람 및 발급 자료	청구인 및 사망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기록 열람 및 발급 조회 완료까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표 자료	청구인 및 사망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본표 조회 완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때는 사망조위금 청구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정보 주체의 본인 청구인 _____ (서명 또는 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